# 진도군 향토음식점 발굴·육성 및 지원 조례안

| 의 안 번 호 | 2023-21 |
|---|---|

제출연월일 : 2023년 3월 일
제 출 자 : 진도군수

## 1. 제정이유

○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수·특산품을 이용하여 맛과 영양이 우수한 향토음식을 판매하는 향토음식점을 발굴·육성·지원하여 음식관광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조례 목적(안 제1조)

○ 향토음식심의위원회 기능 및 구성(안 제3조 ~ 제4조)

○ 향토음식점의 지정 및 육성·지원(안 제7조, 제9조)

- 향토음식의 발굴·육성·보전을 위한 사업
- 향토음식 관광 상품화
- 향토음식 관련 각종 행사 및 경연대회 등 선진지 견학
- 향토음식점 음식문화개선에 관한 사업
- 군에서 발간하는 각종 홍보물 등을 통한 홍보

## 3. 제정조례안 : 붙임

## 4. 관계법령 : 해당없음

## 5. 관련부서 의견 : 의견없음

6. **입법예고 사항** : 2023. 2. 15. ~ 3. 7.(20일간) / 제출의견 없음

7. **사전 협의(승인)사항**

○ 성별영향분석평가 : 붙임(성별영향평가 결과통보 공문)

○ 규제심사 : 해당없음

8. **비용추계서** : 붙임

9. **참고사항** : 없음

10. **진도군 조례규칙심의회 의결** : 2023. 3. 10. 수정의결

진도군 조례 제 호

# 진도군 향토음식점 발굴·육성 및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진도군 향토음식의 계승 발전과 발굴·육성·보전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향토음식"이란 진도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주로 생산되는 농산물, 수산물, 축산물, 임산물 등을 원재료로 사용하여 조리한 향토성 있는 음식을 말한다.
2. "향토음식점"이란 향토음식을 판매하는 업소를 말한다.
3. "관광 상품화"란 관광객에게 향토음식의 맛과 멋을 제공함으로써 지역이미지를 제고하고 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하기 위한 향토음식 개발, 판매, 홍보 등의 제반사항을 말한다.
4. "표지판"이란 향토음식을 조리·판매하는 업소에서 다른 업소와 구별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군 향토음식점 표지판을 말한다.

제3조(향토음식심의위원회) ① 향토음식의 발굴 및 육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진도군 향토음식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은 진도군 음식문화개선운동 추진위원회가 대행한다.

제4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향토음식과 향토음식점의 지정 및 취소 등에 관한 사항
2. 향토음식점의 평가 및 경연대회에 관한 사항

3. 향토음식 관광 상품화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향토음식점과 관련된 주요 사항

제5조(회의) ①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조(실비보상 등)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에 대해서는 「진도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7조(향토음식점의 지정) ① 향토음식점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사람은 진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군수는 위원회를 거쳐 지정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지정된 향토음식점 지정업소에 대하여 향토음식점임을 알리는 표지판을 제작하여 교부할 수 있다.

제8조(지정의 취소) 군수는 향토음식점으로 지정받은 자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위원회의 심의 없이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향토음식으로 지정된 음식을 조리·판매하지 않을 경우

2. 「식품위생법」 제75조에 따라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또는 같은 법 제82조에 따라 영업정지 이상의 처분에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 받은 때

3. 향토음식점으로 지정받은 업소의 영업자가 변경되었을 경우

4. 그 밖에 지정취소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9조(육성 및 지원) ① 군수는 향토음식 및 향토음식점 지정업소의 발굴·육

성·보전과 음식문화개선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향토음식의 발굴·육성·보전을 위한 사업
2. 향토음식 관광 상품화
3. 향토음식점 시설개선 및 집기구입 보조금 지원
4. 향토음식 관련 각종 행사 및 경연대회 등 선진지 견학
5. 향토음식점 음식문화개선에 관한 사업
6. 군에서 발간하는 각종 홍보물 등을 통한 홍보
7. 그 밖에 군수가 향토음식 육성·발굴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급 등에 관한 사항은 「진도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0조(재심사) 군수는 향토음식점 지정업소에 대한 적격 여부를 매년 심사하여야 한다.

제11조(지도·점검) 군수는 향토음식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운영하기 위하여 지도·점검을 할 수 있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진 도 군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2023년 제3회 진도군 조례규칙심의회 개최 결과 통보

2023년 제3회 진도군 조례·규칙심의회 개최 결과(2023. 3. 13.)를 아래와 같이 통보합니다.

□ 아 래 □

| 의안번호 | 자 치 법 규 명 | 심의결과 | 소 관 부 서 | 비고 |
|---|---|---|---|---|
| 2023-5 | 진도군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원안의결 | 경제에너지과 | 서면 |
| 2023-6 | 진도군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안 | 원안의결 | 경제에너지과 | 서면 |
| 2023-7 | 진도군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의결 | 환경수질과 | 서면 |
| 2023-8 | 진도군 수도급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원안의결 | 환경수질과 | 서면 |

붙임 심의 의결서 각 1부. 끝.

진 도 군 수 관인생략

수신자 경제에너지과장, 환경수질과장

공무직 유진미 법무의회팀장 박희주 기획홍보실장 전결 2023. 3. 13. 허수철
협조자

시행 기획홍보실-3209 (2023. 3. 13.) 접수 환경수질과-11720 (2023. 3. 14.)

우 58916 전라남도 진도군 진도읍 첨마길 26 / http://www.jindo.go.kr
전화번호 061-640-3047 팩스번호 061-640-3049 / jindo660@korea.kr / 비공개(6)

내 삶을 지키는 개인정보 보호, 프라이버시 온(ON)!

# 진도군 조례규칙심의위원회 심의 의결서

□ 심사결과

| 번 호 | 제 목 | 신 청 자 | 심 사 요 지 | 심사결과 |
|---|---|---|---|---|
| 2023-4 | 진도군 향토음식점 발굴·육성 및 지원 조례 제정 | 관광과장 | ○ 제정이유 : 향토음식점 발굴, 육성 및 지원하여 음식문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br>○ 주요내용 : 향토음식점 지원 및 향토음식점 심의위원회 구성 | 수정의결 (붙임) |

위와 같이 의결함.

2023. 3. .

| 구 분 | 직 위 | 성 명 | 가(可) | 부(否) | 부(否)일 경우 사유 |
|---|---|---|---|---|---|
| 위 원 장 | 군 수 | 김 희 수 | | | |
| 부위원장 | 부 군 수 | 우 흥 섭 | | | |
| 위 원 | 기 획 홍 보 실 장 | 허 수 철 | | | |
| 〃 | 인 구 정 책 실 장 | 차 재 남 | | | |
| 〃 | 안전생활지원과장 | 허 상 무 | | | |
| 〃 | 총 무 과 장 | 허 규 진 | | | |
| 〃 | 세 무 회 계 과 장 | 박 계 천 | | | |
| 〃 | 민 원 봉 사 과 장 | 허 승 목 | | | |
| 〃 | 수 산 지 원 과 장 | 황 규 용 | | | |
| 〃 | 진 도 개 축 산 과 장 | 강 경 화 | | | |
| 〃 | 해 양 항 만 과 장 | 김 창 대 | | | |
| 〃 | 경 제 에 너 지 과 장 | 이 용 복 | | | |
| 〃 | 주 민 복 지 과 장 | 이 미 예 | | | |
| 〃 | 가 족 행 복 과 장 | 오 승 민 | | | |
| 〃 | 관 광 과 장 | 정 기 문 | | | |
| 〃 | 문화예술체육과장 | 박 윤 수 | | | |
| 〃 | 건 설 과 장 | 박 재 현 | | | |
| 〃 | 도 시 개 발 과 장 | 박 정 현 | | | |
| 〃 | 환 경 수 질 과 장 | 박 병 찬 | | | |
| 〃 | 산 림 휴 양 과 장 | 장 재 필 | | | |
| 〃 | 보 건 소 장 | 조 기 주 | | | |
| 〃 | 농업기술센터소장 | 김 상 득 | | | |
| 〃 | 농수산유통사업단장 | 박 남 규 | | | |
| 〃 | 시설관리사업소장 | 김 영 환 | | | |
| 〃 | 국민해양안전관장 | 이 석 찬 | | | |

[붙 임]

## 진도군 향토음식점 발굴·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수정의결 사항

진도군 향토음식점 발굴·육성 및 지원 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3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은 진도군 음식문화개선운동 추진위원회가 대행한다.

제5조부터 제7조, 제10조를 삭제하고,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를 각각 제7조부터 제11조로 한다.

진도군 향토음식점 발굴·육성 및 지원 조례안

# 비 용 추 계 서

## 1.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

○ 진도군 향토음식점 발굴·육성 및 지원 조례 제13조(육성 및 지원)

## 2. 비용 추계결과

### 가. 추계의 전제

○ 추계기간 : 5년간(2023년 ~ 2027년)

○ 사 업 비 : 50,000천원

○ 재원부담 : 군비 100%

○ 비용추계 내용 : 향토음식점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컨설팅

### 나. 추계 결과

(단위 : 천원)

| 구 분 | 1차년도 (2023년) | 2차년도 (2024년) | 3차년도 (2025년) | 4차년도 (2026년) | 5차년도 (2027년) | 계 |
|---|---|---|---|---|---|---|
| 세 출 | 10,000 | 10,000 | 10,000 | 10,000 | 10,000 | 50,000 |
| 컨설팅 실시 등 | 10,000 | 10,000 | 10,000 | 10,000 | 10,000 | 50,000 |

## 3. 작성자

관광과장 정 기 문 (서명)

# 진 도 군

수신 관광과장
(경유)
제목 「진도군 향토음식점 발굴·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성별영향평가 결과 통보

1. 관광과-3629(2023.2.15.) 호와 관련입니다.

2. 「진도군 향토음식점 발굴·육성 및 지원 조례안」의 성별영향평가서에 대하여 「성별영향평가법」 제8조 제3항에 따라 붙임과 같이 검토 결과를 통보합니다.

붙임 검토의견 통보서 1부. 끝.

전 도 군 수 관인생략

공무직 이은하 가족정책팀장 박지힘 가족행복과장 전결 2023. 2. 24. 오승민
협조자
시행 가족행복과-7635 (2023. 2. 24.) 접수
우 58915 전라남도 진도군 진도읍 철마길 25 / http://www.jindo.go.kr
전화번호 061-540-1265 팩스번호 061-540-0504 / leh13315@korea.kr / 대국민 공개
내 삶을 지키는 개인정보 보호, 프라이버시 온(ON)!

# 성별영향평가 검토의견 통보서

| | | | | |
|---|---|---|---|---|
| 관리번호 | 2023A전남진도007 | | | |
| 정 책 명 | 진도군 항토음식점 발굴·육성 및 지원 조례안 | | | |
| 소관부서 | 지자명 | 전라남도 진도군 | | |
| | 부서명 | 관광과 | | |
| | 담당자명 | 허유안 | 전화번호 | 061-540-3413 |
| 성별영향평가서 제출날짜 | 2023년 2월 15일 | | | |
| 주요 성별영향평가 내용 (관광과) | 진도군 향토음식점 발굴·육성 및 지원 조례안 | | | |
| 종합 검토 의견 (성별영향평가책임관) | □ 개선사항 없음 ■ 자체개선안 동의 □ 재신의견 | | | |
| | '진도군 향토음식점 발굴·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제시된 성별 구분 또는 고정관념, 성별특성 반영, 성별통계 구축, 성별 균형 참여와 관련하여 자체개선안에 동의 | | | |
| | 본 조례 제정안 제5조는 분석평가지표 항목 중 3. 성별균형참여에 해당됨. 이에 해당조항을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따라 성별을 고려하여 위원들을 구성할 수 있도록 명시하여 자체 개선하였음. | | | |
| | (자체개선안)<br>제5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br>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선출한다.<br>③ 당연직 위원은 산림과장, 경제에너지과장, 농업기술센터소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호의 해당하는 자 중에서 진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위촉한다.<br>1. 진도군의회에서 추천한 사람<br>2. 식품산업 관련 대학교수 또는 요리전문가<br>3. 음식 관련 단체·협회 종사자<br>4. 그 밖에 향토음식과 관련한 학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자<br>④ 위촉직 위원의 성별의 비율은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른다.<br>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위생담당이 된다. | | | |
| 검토의견 반영계획서 | 해당 없음 | | | |

「성별영향평가법」 제8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성별영향평가에 대한 검토의견을 통보합니다.

2023년 02월 24일

진도군성별영향평가책임관

(납닝자/연락번호 : 이은하/061-540-1265)

관광과장 귀하

# 진 도 군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진도군 향토음식점 발굴·육성 및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1. 「진도군 향토음식점 발굴·육성 및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진도군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니,

2. 기획홍보실장과 총무과장은 붙임 예고문을 군보와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주시고, 읍면장은 군민들에게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자치법규명 : 진도군 향토음식점 발굴·육성 및 지원 조례
나. 예고기간 : 2023. 2. 15. ~ 3. 7.(20일간)
다. 예고방법 : 군보 및 홈페이지
라. 의견제출 : 관광과 위생팀(☎ 061-540-3413)

붙임 1. 공고결재 1부.
2. 진도군 향토음식점 발굴 육성 및 지원 조례 입법예고 1부. 끝.

진 도 군 수 관인생략

수신자 노, 보, 도

| 주무관 | 허류방 | 위생팀장 | 최미경 | 관광과장 | 전결 2023. 2. 14. 정기룡 |
|---|---|---|---|---|---|

협조자

시행 관광과-3475 (2023. 2. 14.) 접수

우 58916 전라남도 진도군 진도읍 철마길 25 / http://www.jindo.go.kr

전화번호 061-540-3413 팩스번호 061-540-3448 / yuan@korea.kr / 대국민 공개

내 삶을 지키는 개인정보 보호, 프라이버시 온(ON)!

| 문서번호 | 관광과 - |
|---|---|
| 보존기간 | |
| 결재일자 | 2023. 2 |
| 공개구분 | 공개 |

| 담당자 | 위생팀장 | 관광과장 | 부 군 수 | 군 수 | 결재 |
|---|---|---|---|---|---|
| 허유안 | 최미경 | 2023.2. | 위초성 | | |
| 협조 | 법무의회팀장 박현주 기획홍보실장 허우성 | | | | |

# 진도군 향토음식점 발굴·육성 및 지원 조례 제정 계획

Jindo

## 진 도 군
## (관 광 과)

# 진도군 향토음식점 발굴·육성 및 지원 조례 제정 계획

## 1 제정 이유

○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수·특산품을 이용하여 맛과 영양이 우수한 향토음식을 판매하는 향토음식점을 발굴·육성·지원하여 음식관광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

## 2 주요 내용

○ 조례 목적(안 제1조)

○ 향토음식심의위원회 기능 및 구성(안 제3조 ~ 제4조)

○ 향토음식점의 지정 및 육성·지원(안 제7조, 제9조)

- 향토음식의 발굴·육성·보전을 위한 사업
- 향토음식 관광 상품화
- 향토음식 관련 각종 행사 및 경연대회 등 선진지 견학
- 향토음식점 음식문화개선에 관한 사업
- 군에서 발간하는 각종 홍보물 등을 통한 홍보

## 3 제정 조례(안)

○ 붙임 참조

## 4 향후 추진일정

○ 2023년 2월 : 입법예고

○ 2023년 3월 : 조례규칙심의회

○ 2023년 3월 : 의회 의결 및 조례 공포

# 진도군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의 안 번 호 | 2023-22 |
|---|---|

제출연월일 : 2023년 3월 13일
제 출 자 : 진 도 군 수

## 1. 개정이유

○ 기존 상수도 급수구역과 멀리 떨어진 위치에 있는 귀농·귀촌인 등 주택 신축 시 과다한 상수도 개인급수시설비를 일부 감면하여 귀농·귀촌인 및 주민들에게 경제적인 부담을 줄여 인구 유입 및 정착에 기여

## 2. 주요내용

○ (변경) 공사비 부담 및 급수설비 관리에 관한 사항(안 제11조 제1항)

- "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 를 "신청인의 부담으로 하며, 2가구 이상, 단일가구, 생계급여 수급자 등에 대한 공사비 부담 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로 한다.

## 3. 개정 조례안 : 붙임

## 4. 관계법령 : 「수도법」

## 5. 관련부서 의견 : 해당없음

## 6. 입법예고 사항 : 2023. 2. 15. ~ 3. 7.(20일간) / 제출의견 없음

7. 사전 협의(승인)사항

○ 성별영향분석평가 : 붙임(분석평가서 검토통보 공문)

○ 규제심사 : 해당없음

8. 비용추계서 : 붙임

9. 참고사항 : 없음

10. 진도군 조례규칙심의회 의결 : 2023. 3. 13. 원안의결

진도군 조례 제 호

# 진도군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진도군 수도급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에 제1항 중 "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를 "신청인의 부담으로 하며, 2가구 이상, 단일가구, 생계급여 수급자 등에 대한 공사비 부담 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로 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 현 행 | 개 정 안 |
| --- | --- |
| 제11조(공사비 부담 및 급수설비 관리) | 제11조(공사비 부담 및 급수설비 관리) |
| 1. 옥외(대지경계선 밖의 급수설비와 대지경계선에서 계량기까지로 한다) 시설은 당해 **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 다만, 노후계량기 와 동파계량기를 교체하거나 급수설비의 보수 또는 급수구간의 노후로 개선공사를 할 때의 공사비용은 군에서 부담한다. | 1. 옥외(대지경계선 밖의 급수설비와 대지경계선에서 계량기까지로 한다) 시설은 당해 신청인의 부담으로 **하며, 2가구 이상, 단일가구, 생계급여 수급자 등에 대한 공사비부담 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다만, 노후계량기 와 동파계량기를 교체하거나 급수설비의 보수 또는 급수구간의 노후로 개선공사를 할 때의 공사비용은 군에서 부담한다. |
| 2. ~ 6. (생략) | 2. ~ 6. (현행과 같음) |

# 진 도 군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2023년 제3회 진도군 조례규칙심의회 개최 결과 통보

2023년 제3회 진도군 조례·규칙심의회 개최 결과(2023. 3. 13.)를 아래와 같이 통보합니다.

□ 아 래 □

| 의안번호 | 자 치 법 규 명 | 심의결과 | 소 관 부 서 | 비고 |
|---|---|---|---|---|
| 2023-5 | 진도군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원안의결 | 경제에너지과 | 서면 |
| 2023-6 | 진도군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안 | 원안의결 | 경제에너지과 | 서면 |
| 2023-7 | 진도군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의결 | 환경수질과 | 서면 |
| 2023-8 | 진도군 수도급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원안의결 | 환경수질과 | 서면 |

붙임 심의 의결서 각 1부. 끝.

진 도 군 수 관인생략

수신자 경제에너지과장, 환경수질과장

공무직 유진미 법무의회팀장 박현주 기획홍보실장 전결 2023. 3. 13. 허수철
협조자

시행 기획홍보실-3209 (2023. 3. 13.) 접수 환경수질과-11720 (2023. 3. 14.)

우 58916 전라남도 진도군 진도읍 철마길 26 / http://www.jindo.go.kr
전화번호 061-540-3047 팩스번호 061-540-3049 / jindo660@korea.kr / 비공개(6)

내 삶을 지키는 개인정보 보호, 프라이버시 온(ON)!

# 조례 · 규칙심의회 심의 의결서

□ 심의결과

| 번호 | 제목 | 신청자 | 심의요지 | 심의결과 |
|---|---|---|---|---|
| 2023-7 | 진도군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환경수질과장 | ○개정이유<br>기존 상수도 급수구역과 멀리 떨어진 위치에 귀농·귀촌 등 주택 신축 시 과다한 상수도 개인급수시설비를 일부 감면하여 귀농·귀촌인 및 주민들에게 경제적인 부담을 줄여 인구 유입 및 정착에 기여<br>○주요내용<br>- 공사비 부담 및 급수설비 관리에 관한 사항 | 수정안의결 |

위와 같이 의결함

2023. 3. 17.

| 구분 | 직위 | 성명 | 가(可) | 부(否) | 부(否)일 경우 사유 |
|---|---|---|---|---|---|
| 의장 | 군수 | 김희수 | | | |
| 부의장 | 부군수 | 우홍섭 | | | |
| 위원 | 기획홍보실장 | 허수철 | | | |
| 〃 | 인구정책실장 | 차재남 | | | |
| 〃 | 안전생활지원과장 | 허상무 | | | |
| 〃 | 총무과장 | 허규진 | | | |
| 〃 | 세무회계과장 | 박제천 | | | |
| 〃 | 민원봉사과장 | 허숨록 | | | |
| 〃 | 수산지원과장 | 황규용 | | | |
| 〃 | 진도개축산과장 | 강경화 | | | |
| 〃 | 해양항만과장 | 김창대 | | | |
| 〃 | 경제에너지과장 | 이용복 | | | |
| 〃 | 주민복사과장 | 이미예 | | | |
| 〃 | 가족행복과장 | 오승민 | | | |
| 〃 | 관광과장 | 정기문 | | | |
| 〃 | 문화예술체육과장 | 박윤수 | | | |
| 〃 | 건설과장 | 박제현 | | | |
| 〃 | 도시개발과장 | 박정현 | | | |
| 〃 | 환경수질과장 | 박병찬 | | | |
| 〃 | 산림휴양과장 | 장재필 | | | |
| 〃 | 보건소장 | 조기주 | | | |
| 〃 | 농업기술센터장 | 김상득 | | | |
| 〃 | 농수산유통사업단장 | 박남규 | | | |
| 〃 | 시설관리사업소장 | 김영환 | | | |
| 〃 | 국민해양안전관장 | 이석찬 | | | |

# 진도군 수도급수 조례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 1. 미첨부 근거 규정

○ 「진도군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10조제2항제1호

-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3억원 미만인 경우

## 2. 미첨부 사유

○ 일부개정안의 내용에 따라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으로 비용추계서를 미첨부합니다.

## 3. 작성자

○ 소　　속: 환경수질과

○ 직　　급: 공업9급

○ 성　　명: 김현효

환경수질과장　　박병찬 (서명)

# 진 도 군

수신 환경수질과장
(경유)
제목 「진도군 수도급수 조례」 대한 성별영향평가 결과 통보

1. 환경수질과-6724(2023.2.14.) 호와 관련입니다.

2. 「진도군 수도급수 조례」는 행정기관 내부와 운영·관리에 관한 법령에 해당하므로, 제출한 체크리스트만으로 성별영향평가 절차가 종료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끝.

진 도 군 수 관인생략


공무직 여은하 가족정책팀장 박지현 가족행복과장 진걸 2023. 2. 15. 오승민
협조자
시행 가족행복과-6241 (2023. 2. 15.) 접수 환경수질과-7017 (2023. 2. 16.)
우 58915 전라남도 진도군 진도읍 철마길 25 / http://www.jindo.go.kr
전화번호 061-540-1265 팩스번호 061-540-0504 / leh13315@korea.kr / 대국민 공개

내 삶을 지키는 개인정보 보호, 프라이버시 온(ON)!

# 진 도 군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진도군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진도군 수도급수 조례」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제1항 및 「진도군 법무행정 사무처리 규칙」 제13조제3항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 기획홍보실장 및 총무과장은 붙임 공고를 군보 및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2021년1월25일-a0~공고결재 1부.
2.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부.
3.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서식) 1부. 끝.

진 도 군 수

수신자 기획홍보실장, 총무과장

주무관 김현호 상수도팀장 박진석 환경수질과장 전결 2022. 2. 14 박병찬

협조자

시행 환경수질과-6786 접수

우 58915 전라남도 진도군 진도읍 혈마길 25, 4층 환경수질과 / http://www.jindo.go.kr

전화번호 061-540-6208 팩스번호 061-540-3996 / khh81879@korea.kr / 대국민 공개

내 삶을 지키는 개인정보 보호, 프라이버시 온(ON)!

군민이 주인/ 살기좋은 진도

| 문서번호 | 환경수질과- |
|---|---|
| 보존기간 | |
| 보고일자 | 2023. 2. . |

| 기안자 | 팀 장 | 과 장 | 부군수 | 군 수 | 결재 |
|---|---|---|---|---|---|
| 김현호 | | | | | |
| 협조 | 법무의회팀장 박현주 기획홍보실장 | | | | |

# 진도군 수도급수 조례 및 시행규칙 일부 개정 계획(안)

Jindo

진 도 군
(환경수질과)

# 진도군 수도급수 조례 및 시행규칙 일부 개정 계획(안)

## 1 개정 이유

○ 기존 상수도 급수구역과 멀리 떨어진 위치에 귀농·귀촌 등 주택 신축 시 과다한 상수도 개인급수시설비를 일부 감면하여 귀농·귀촌인 및 주민들에게 경제적인 부담을 줄여 인구 유입 및 정착에 기여

## 2 주요 내용

○ 진도군 수도급수 조례

- 공사비 부담 및 급수설비 관리에 관한 사항(안 제11조 제1항)

○ 진도군 수도급수 조례 시행규칙

- 공사비 부담에 대한 기준에 관한 사항(안 제10조의2)

## 3 개 정 조 례 안

○ 진도군 수도급수 조례(안) : 붙임 1

○ 진도군 수도급수 조례 시행규칙(안) : 붙임 2

## 4 향후 추진일정

○ 2023년 2월 : 입법예고

○ 2023년 2월 : 조례규칙심의회

○ 2023년 3월 : 의회 의결 및 조례 공포

# 진도군 국민해양안전관 운영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

| 의 안 번 호 | 2023-23 |
|---|---|

제출연월일 : 2023년 3월 일
제 출 자 : 진도군수

## 1. 제정이유

○ 「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제36조(추모사업 등 시행)에 따라 건립된 진도군 국민해양안전관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 2. 주요내용

○ **관리·운영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안 제3조)**

- 운영성과 및 결과분석, 시설관리와 점검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된 관리·운영계획을 매년 수립

○ **사업 수행에 관한 사항 (안 제5조)**

- 해양안전교육·체험에 관한 사항, 해양안전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운용에 관한 사항 등의 사업을 수행

○ **시설이용에 관한 사항 (안 제6조 ~ 10조)**

- 국민해양안전관 이용방법, 이용료, 반환규정 명시

○ **시설의 위탁에 관한 사항 (안 제11조)**

- 기관 또는 비영리 법인·단체에 진도군 국민해양안전관 관리·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

○ **자원봉사자 배치에 관한 사항 (안 제13조)**

- 국민해양안전관의 편의 및 질서유지를 위하여 자원봉사자를 배치

**3. 조례안** : 붙임

**4. 관계법령** : 「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5. 관련부서 의견** : 의견없음

**6. 입법예고 사항** : 2022. 7. 27. ~ 2022. 8. 16.(20일간) / 제출의견 없음

**7. 사전 협의(승인)사항**

○ 성별영향분석평가 : 붙임(분석평가서 검토통보 공문)

○ 규제심사 : 해당없음

**8. 비용추계서** : 붙임

**9. 참고사항** : 없음

**10. 진도군 조례규칙심의회 의결** : 2022. 8. 17. 원안의결

진도군 조례 제 호

# 진도군 국민해양안전관 운영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해양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해양사고에 대한 대처 능력을 기르기 위하여 「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제36조에 따라 설립한 진도군 국민해양안전관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및 위치)** 진도군 국민해양안전관의 명칭 및 위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명칭: 진도군 국민해양안전관
2. 위치: 전남 진도군 임회면 진도항길 161

**제3조(관리·운영계획의 수립)** 진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진도군 국민해양안전관의 운영 및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진도군 국민해양안전관 관리·운영계획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1. 진도군 국민해양안전관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2. 진도군 국민해양안전관의 운영성과 및 결과분석
3. 진도군 국민해양안전관의 시설관리와 시설점검에 관한 사항
4. 그 밖의 진도군 국민해양안전관의 효율적 관리·운영과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시설 및 운영)** 군수는 체계적이고 현장감 있는 교육을 위하여 진도군 국민해양안전관에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1. 실내 교육·체험장 : 선박탈출 및 바다생존 수영법, 익수자 구조체험,

선박상황 대피체험, 해양직업 체험, 소화기 체험 및 응급구조 체험, 지진체험 및 풍수해 체험시설 등

2. 야외훈련장 : 해양안전체험장 및 어린이 해양안전시설 등 운영

3. 전시·숙박시설 : 4.16 메모리얼홀, 특수 영상관, 유스호스텔 등

4. 그 밖의 시설 : 사무실, 관장실, 의무실, 관리실, 방송실, 물품보관창고 등 각종 업무관련 시설, 매점 및 카페 등 편의시설

**제5조(사업 수행)** 진도군 국민해양안전관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해양안전교육·체험에 관한 사항

2. 해양안전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운용에 관한 사항

3. 진도군 국민해양안전관 자료발간 및 홍보에 관한 사항

4. 그 밖의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개관 및 휴관)** ① 진도군 국민해양안전관의 개관시간은 09:00~18:00까지로 한다.

② 진도군 국민해양안전관(유스호스텔 포함)의 휴관일은 일요일, 공휴일 및 매월 세 번째 월요일(정기 점검일)로 한다.

③ 군수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진도군 국민해양안전관의 운영상 필요한 경우에는 개관시간 및 휴관일을 조정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제3항에 따른 임시휴관일을 정하거나 운영시간을 변경하는 때에는 사전에 군보 또는 인터넷에 게시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제7조(이용방법)** ① 진도군 국민해양안전관은 사전 예약제 운영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개인 이용자의 경우 제6조의 개관시간 내에 방문하여 현장접수 할 수 있다.

② 12세 이하의 어린이가 진도군 국민해양안전관의 체험시설을 이용하고자 할 때에는 성인 인솔자가 동행하여야 한다.

③ 체험코스별 이용가능 연령 및 성인 인솔자 동반기준 등 체험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④ 진도군 국민해양안전관 내 유스호스텔을 이용(변경)하려는 자는 별지 서식의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이용료)** ① 진도군 국민해양안전관(유스호스텔 포함)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표에 따른 이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군수가 이용료를 무료로 정할 수 있다.

**제9조(이용료의 반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이용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한다.

1. 과오납(過誤納)한 경우 : 과오납한 금액 반환
2.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불가항력의 사유로 진도군 국민해양안전관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 : 전액 반환
3. 시설 개·보수, 감염병 예방 등 군수가 공익상 필요에 의하여 시설을 휴관하는 경우 : 전액 반환
4. 이용자가 이용일 3일 전까지 예약을 취소한 경우 : 전액 반환
5. 이용자가 이용일 2일 전까지 예약을 취소한 경우 : 이용료의 10% 공제 후 반환
6. 이용자가 이용일 1일 전까지 예약을 취소한 경우 : 이용료의 20% 공제 후 반환
7. 이용자가 이용일 당일 예약을 취소하거나 불참한 경우 : 이용료의

30% 공제 후 반환

**제10조(이용의 제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보호자를 동반하지 않은 12세 이하의 어린이
2. 위험물이나 악취·혐오감을 주는 물품을 소지한 사람
3. 그 밖에 군수가 안전 및 질서유지 등을 위하여 입장의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1조(시설의 위탁)** ① 군수는 진도군 국민해양안전관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기관 또는 비영리 법인·단체에 진도군 국민해양안전관 관리·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을 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위탁재산을 관리할 때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군수의 승인 없이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지 못한다.

1. 위탁재산을 위탁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
2. 위탁재산의 원상을 변경하는 행위

④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탁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위탁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본 조례 및 관계 법령을 위반하였을 때
2. 수탁자가 위·수탁 계약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3. 수탁자가 시정사항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을 때
4. 수탁자에게 운영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

5. 그 밖에 공익상 위탁을 유지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했을 때

⑤ 진도군 국민해양안전관 관리·운영 위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진도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진도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및 「진도군 유스호스텔 관리 및 운영 조례」를 따른다.

**제12조(보험가입)** ① 군수는 진도군 국민해양안전관과 유스호스텔 이용자의 사고 상해 및 재산의 보전을 위하여 손해보험을 가입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1조에 따라 시설을 위탁하는 경우 수탁자가 위·수탁 계약기간을 보험기간으로 하여 손해보험을 가입하고 그 증서 또는 증서의 사본을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자원봉사자 배치)** 군수는 진도군 국민해양안전관의 원활한 운영과 이용객의 편의 및 질서유지를 위하여 자원봉사자를 배치할 수 있으며, 자원봉사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 진도군 국민해양안전관 이용료 등(제8조 관련)

## 1. 진도군 국민해양안전관

| 구 분 | 1인당 이용료 | | | 비 고 |
|---|---|---|---|---|
| | 개인 | 단체 (15명이상) | 진도군민 | |
| 입장료 | 2,000원 | 1,000원 | 1,000원 | |
| 일반체험 | 4,000원 | 3,000원 | 2,000원 | 미취학 아동 인솔자 무료 |
| 수조체험+일반체험 | 8,000원 | 6,000원 | 4,000원 | 12세 이하는 보호자 동행(무료) |
| 70세이상 | 무료 | | | 해양훈련, 해양재난, 자연재해 등 일부체험 제외 |

## 2. 유스호스텔

| 구 분 | 청 소 년 | | 일 반 인 | | 정원초과 (1인 기준) |
|---|---|---|---|---|---|
| | 8인실 | 9인실 | 8인실 | 9인실 | |
| 객실사용료 | 40,000원 | 50,000원 | 50,000원 | 60,000원 | 10,000원 |
| 식대 (1인1식) | 6,000원 | | 7,000원 | | |
| 세미나실 | ○ 3시간 기준 : 60,000원<br>○ 1시간 초과시마다 : 10,000원 | | ○ 3시간 기준 : 70,000원<br>○ 1시간 초과시마다 : 10,000원 | | |
| 기타 | ○ 1박은 당일 15:00 ~ 다음날 11:00까지 한다.<br>**(초과시는 1박으로 간주)**<br>※ 식대는 이용자의 요청에 의한 식단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 | | | |

[별지 서식]

<table>
<tr><td colspan="8">진도군 국민해양안전관 유스호스텔 사용(변경) 신청서</td></tr>
<tr><td rowspan="2">신청자</td><td colspan="2">성명(단체명)</td><td colspan="3"></td><td>생년월일<br>(등록번호)</td><td></td></tr>
<tr><td colspan="2">주 소</td><td colspan="3"></td><td>연락처</td><td></td></tr>
<tr><td rowspan="2">사용인원</td><td>계</td><td>남</td><td>여</td><td rowspan="2">사용자 구분</td><td colspan="3" rowspan="2">학생(초·중·고·대학생)<br>근로청소년·유치부·직업훈련·기타</td></tr>
<tr><td></td><td></td><td></td></tr>
<tr><td>사용목적</td><td colspan="7"></td></tr>
<tr><td>사용기간</td><td colspan="7">년 월 일 시 ~ 년 월 일 시</td></tr>
<tr><td>변경내용</td><td colspan="7"></td></tr>
<tr><td>변경기간</td><td colspan="7"></td></tr>
<tr><td>사용요금<br>(인원수×요금)</td><td colspan="7"></td></tr>
<tr><td colspan="8">첨부 : 행사계획 1부</td></tr>
<tr><td colspan="8">「진도군 국민해양안전관 운영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제7조제3항에 따라 이면의 이행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하고 위와 같이 사용(변경)을 신청합니다.<br><br>년 월 일<br><br>신청인 성 명 : (인)<br><br>진도군수 귀하</td></tr>
</table>

(뒷면)

## 사용자 준수사항

1. 시설물 파손 및 기타 시설관리에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

2. 비행을 조장하거나 미풍양속을 해치는 행위 등 기타 불건전한 행위를 하지 않는다.

3. 주변의 자연환경을 오염시키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

4. 그 밖에 유스호스텔 내에서 금지하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

※ 상기 사항을 준수하지 아니할 때에는 유스호스텔 이용승인을 취소한다.

# 진 도 군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2022년 제8회 진도군 조례규칙심의회 개최 결과 통보

**2022년 제8회 진도군 조례·규칙심의회 개최 결과(2022. 8. 17.)**를 아래와 같이 통보합니다.

□ 아 래 □

| 의안번호 | 자 치 법 규 명 | 심의결과 | 소 관 부 서 | 비고 |
|---|---|---|---|---|
| 2022-20 | 진도군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안 | 원안의결 | 관 광 과 | |
| 2022-21 | 진도군 국민해양안전관 운영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 | 원안의결 | 국민해양안전관 | |

붙임 심의 의결서 각 1부. 끝.

진 도 군 수

수신자 관광과장, 국민해양안전관장

주무관 김채환 법무의회팀장 박은경 기획예산과장 전결 2022. 8. 17. 허수철
협조자

시행 기획예산과-8935 (2022. 8. 17.) 접수 국민해양안전관-1415 (2022. 8. 17.)

우 58915 전라남도 진도군 진도읍 철마길 26 / http://www.jindo.go.kr
전화번호 061-540-3047 팩스번호 061-540-3049 / chkim5532@korea.kr / 비공개(5)

내 개인정보는 철저히 지키GO! 타인의 개인정보는 소중히 참고GO!

# 조례 · 규칙심의회 심의 의결서

□ 심의결과

| 번 호 | 제 목 | 신 청 자 | 심 의 요 지 | 심의결과 |
|---|---|---|---|---|
| 2022 시 | 진도군<br>국민해양안전관<br>운영 및 관리<br>등에 관한 조례안 | 국민해양<br>안전관장 | ○제정이유<br>- 국민해양안전관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에 필요한 사항 제정<br>○주요내용<br>- 관리 · 운영계획 수립<br>- 사업수행, 이용방법 | 원안의결 |

위와 같이 의결함
2022. 8. 7.

| 구 분 | 직 위 | 성 명 | 가(피) | 부(否) | 부(否)일 경우 사 유 |
|---|---|---|---|---|---|
| 위 원 장 | 군 수 | 김 희 수 | 김희수 | | |
| 부 위 원 장 | 부 군 수 | 윤 연 화 | | | |
| 위 원 | 관 광 개 발 국 장 | 차 제 남 | 차제남 | | |
| 〃 | 경 제 산 업 국 장 | 김 희 훈 | 김희훈 | | |
| 〃 | 기 획 예 산 과 장 | 허 수 철 | 허수철 | | |
| 〃 | 일 자 리 투 자 과 장 | 이 용 복 | 이용복 | | |
| 〃 | 행 정 과 장 | 허 규 진 | 허규진 | | |
| 〃 | 주 민 복 지 과 장 | 이 미 예 | 이미예 | | |
| 〃 | 안 전 생 활 시 원 과 장 | 곽 봉 웅 | 곽봉웅 | | |
| 〃 | 민 원 봉 사 과 장 | 오 기 남 | | | |
| 〃 | 세 무 회 계 과 장 | 박 계 천 | 박계천 | | |
| 〃 | 관 광 과 장 | 정 기 문 | | | |
| 〃 | 문 화 예 술 체 육 과 장 | 박 윤 수 | | | |
| 〃 | 건 설 교 통 과 장 | 곽 상 규 | 곽상규 | | |
| 〃 | 지 역 개 발 과 장 | 박 재 현 | 박재현 | | |
| 〃 | 진 도 항 만 개 발 과 장 | 김 창 대 | 김창대 | | |
| | 그 린 에 너 지 사 업 과 | 박 정 현 | | | |
| 〃 | 경 제 마 케 팅 과 장 | 박 병 찬 | 박병찬 | | |
| 〃 | 농 업 지 원 과 장 | 김 명 효 | | | |
| 〃 | 수 산 지 원 과 장 | 황 규 용 | 황규용 | | |
| 〃 | 진 도 개 축 산 과 장 | 강 경 화 | | | |
| 〃 | 환 경 산 림 과 장 | 장 재 필 | 장재필 | | |
| 〃 | 보 건 소 장 | 조 기 주 | 조기주 | | |
| 〃 | 농 업 기 술 센 터 소 장 | 김 상 득 | 김상득 | | |
| 〃 | 상 하 수 도 사 업 소 장 | 오 승 민 | | | |
| 〃 | 시 설 관 리 사 업 소 장 | 김 영 환 | | | |
| 〃 | 국 민 해 양 안 전 관 | 이 석 찬 | 이석찬 | | |

# 진도군 국민해양안전관 운영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비용추계서

## 1.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

### 가. 관련조문

○ 진도군 국민해양안전관 운영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제8조 및 제11조

### 나. 비용발생 요인

○ 진도군 국민해양안전관 운영인력 인건비 및 프로그램 운영 등

## 2. 비용 추계결과

### 가. 추계의 전제 (년도별 2% 증)

#### 1) 세입

○ 진도군 국민해양안전관 건립에 따른 각종체험, 전시관람, 유스호스텔 사용료, 카페테리아 등 시설 위탁료 수입을 적용하여 추계

○ 진도군 국민해양안전관 이용료

- 각종 체험료 : 4,000원(평균) * 200명/일 * 300일 = 240,000천원
- 유스호스텔 사용료 = 127,200천원
  · 객실 460,000원/일 * 300일 * 80%(이용률) = 110,400천원
  · 세미나실 70,000원/일 * 300일 * 80%(이용률) =16,800천원
- 시설 임차료(공유재산관리 조례에 따라 건물평가액, 부지평가액으로 예정가격 산정) : 48,780원/㎡*71.5㎡*12월 = 41,853천원

#### 2) 세출

○ 2022년 총액 : 2,585,000천원

- 인건비 : 1,116,110천원(국비 669,667 군비 446,443)
- 수당 등 : 39,740천원(국비 23,844 군비 15,896)
- 물품구입 등 각종 운영비 : 674,875천원(국비 404,924 군비 269,951)
- 공과금 등 공공운영비 : 754,275천원(국비 452,565 군비 301,710)

## 나. 추계 결과

| 구 분 | 1차년도 (2022년) | 2차년도 (2023년) | 3차년도 (2024년) | 4차년도 (2025년) | 5차년도 (2026년) | 계 |
|---|---|---|---|---|---|---|
| 세 입 | 409,053 | 417,234 | 425,579 | 434,090 | 442,771 | 2,128,727 |
| 수조·일반체험, 전시관람료 | 240,000 | 244,800 | 249,696 | 254,690 | 259,783 | 1,405,091 |
| 유스호스텔 사용료 | 127,200 | 129,744 | 132,339 | 134,986 | 137,685 | 661,954 |
| 시설 임차료 | 41,853 | 42,690 | 43,544 | 44,415 | 45,303 | 217,805 |
| 세 출 | 2,585,000 | 2,636,700 | 2,689,434 | 2,743,223 | 2,798,087 | 13,452,444 |
| 인건비(국비) | 669,667 | 683,060 | 696,722 | 710,656 | 724,869 | 3,484,974 |
| 인건비(군비) | 446,443 | 455,372 | 464,479 | 473,769 | 483,244 | 2,323,307 |
| 수당 등(국비) | 23,844 | 24,321 | 24,807 | 25,303 | 25,810 | 124,085 |
| 수당 등(군비) | 15,896 | 16,214 | 16,538 | 16,869 | 17,206 | 82,723 |
| 운영비(국비) | 404,924 | 413,022 | 421,283 | 429,709 | 438,303 | 2,107,241 |
| 운영비(군비) | 269,951 | 275,350 | 280,857 | 286,474 | 292,204 | 1,404,836 |
| 공공운영비(국비) | 452,565 | 461,616 | 470,849 | 480,266 | 489,871 | 2,355,167 |
| 공공운영비(군비) | 301,710 | 307,744 | 313,899 | 320,177 | 326,581 | 1,570,111 |

다. 재원조달방안

| 구 분 | | 1차년도 (2022년) | 2차년도 (2023년) | 3차년도 (2024년) | 4차년도 (2025년) | 5차년도 (2026년) | 계 |
|---|---|---|---|---|---|---|---|
| 총 계 | | 2,994,053 | 3,053,934 | 3,115,013 | 3,177,313 | 3,240,858 | 15,581,171 |
| 의존 재원 | 소 계 | 2,585,000 | 2,636,700 | 2,689,434 | 2,743,223 | 2,798,087 | 13,452,444 |
| | 국고보조금 | 1,551,000 | 1,582,019 | 1,613,661 | 1,645,934 | 1,678,853 | 8,071,467 |
| | 군 비 | 1,034,000 | 1,054,680 | 1,075,773 | 1,097,289 | 1,119,235 | 5,380,977 |
| 자체 수입 | 소 계 | 409,053 | 417,234 | 425,579 | 434,090 | 442,771 | 2,128,727 |
| | 세외수입 | 409,053 | 417,234 | 425,579 | 434,090 | 442,771 | 2,128,727 |

3. 작성자

○ 국민해양안전관 직급 세무7급 성명 박성호

국민해양안전관장 이석찬 (서명생략)

# 진 도 군

수신 국민해양안전관장
(경유)
제목 「진도군 국민해양안전관 운영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에 대한 성별영향평가 결과 통보

1. 국민해양안전관-1324(2022. 8. 3.)호와 관련입니다.

2. 「진도군 국민해양안전관 운영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의 성별영향평가서에 대하여 「성별영향평가법」 제8조 제3항에 따라 붙임과 같이 검토 결과를 통보합니다.

붙임 검토의견 통보서 1부. 끝.

진 도 군 수 관인생략

주무관 박경선 여성보육팀장 병가 안전생활지원 전결 2022. 6. 10
협조자 과장 곽봉몽

시행 안전생활지원과-23757 (2022. 8. 10.) 접수 국민해양안전관-1372 (2022. 8. 10.)

우 58915 전라남도 진도읍 철마길 25, 4층 안전생활지원과 / http://www.jindo.go.kr
전화번호 061-540-6882 팩스번호 061-540-6899 / pks2084@korea.kr / 대국민 공개

내 개인정보는 철저히 지키GO! 타인의 개인정보는 소중히, 참고GO!

# 성별영향평가 검토의견 통보서

| | | | | |
|---|---|---|---|---|
| 관리번호 | 2022A전남진도023 | | | |
| 정 책 명 | 진도군 국민해양안전관 운영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 | | |
| 소관부서 | 기관명 | 전라남도 진도군 | | |
| | 부서명 | 국민해양안전관 | | |
| | 담당자명 | 박성호 | 전화번호 | 061-540-1203 |
| 성별영향평가서 제출날짜 | 2022년 8월 3일 | | | |
| 주요 성별영향평가 내용 (국민해양안전관) | 진도군 국민해양안전관 운영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 | | |
| 종합 검토 의견 (성별영향평가책임관) | ㅣ ! 개선사항 없음 ■ 자체개선안 동의 □ 개선의견<br><br>소관부서에서는 조례의 [별지서식] 진도군 국민해양안전관 유스호스텔 사용(변경)신청서 서식 사용인원에 '남/여' 성별 구분란을 추가하여 성별 통계를 생산하도록 하는 자체개선안을 제시하였으며, 이는 성별영향평가 지표 4. 성별통계에 해당함.<br>이에 따라 '진도군 국민해양안전관 운영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과 관련한 자체개선안에 동의함<br><br>(자체개선안 내용) [별지 서식] 진도군 국민해양안전관 유스호스텔 사용(변경) 신청서의 사용인원에 '남/여' 성별란 추가 | | | |
| 검토의견 반영계획서 | 해당 없음 | | | |

「성별영향평가법」 제8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성별영향평가에 대한 검토의견을 통보합니다.

2022년 08월 09일

**진도군성별영향평가책임관**

(담당자/연락번호 : 박경선/061-540-6882)

**국민해양안전관장** 귀하

# 진 도 군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진도군 국민해양안전관 운영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1. 관련: 「행정절차법」 제41조, 「진도군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

2. 「진도군 국민해양안전관 운영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붙임과 같이 공고하니

3. 기획예산과장과 행정과장께서는 [붙임]입법예고문을 군보와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공고 결재문 1부.
2. 진도군 국민해양안전관 운영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1부. 끝.

## 진 도 군 수

수신자 기획예산과장, 행정과장

주무관 박성호 ★관리팀장 연가 국민해양안전 신설 2022. 7. 25.
관장 이석찬

협조자 운업팀장 박형진 법무의회팀장 박은경

시행 국민해양안전관-1240 접수

우 58915 전라남도 진도군 진도읍 천마길 25, 국민해양안전관 / http://www.jindo.go.kr

전화번호 061-540-1203 팩스번호 061-540-0503 / JINDO1278@korea.kr / 대국민 공개

내 개인정보는 철저히 지키GO! 타인의 개인정보는 소중히 잠그GO!

군민이 주인! 살기좋은 진도

| 문서번호 국민해양안전관- | 담 당 자 | 관리팀장 | 국민해양안전관 장 | 부 군 수 | 군 수 | 결 제 |
|---|---|---|---|---|---|---|
| 보존기간 5년 | 박성호 | 김영주 | 이미현 | | | |
| 결재일자 2022. 7. | 협조 운영팀장 방홍인 | 방무의회팀장 황영 | 기획예산과장 허유성 | | | |
| 공개구분 | | | | | | |

# 「진도군 국민해양안전관 운영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제정 계획(안)

진 도 군
[국민해양안전관]

# 진도군 국민해양안전관 운영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제정계획

## Ⅰ 제정의 필요성

○ 국민의 안전의식을 높이고 해양안전에 대한 대국민 의식 전환을 위한 해양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국민해양안전관 운영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서 국민해양안전관의 효율적인 운영과 적정한 관리를 도모하고자 함

## Ⅱ 주요 제정내용

○ 관리·운영계획의 수립(안 제3조)

○ 사업수행, 이용·방법, (안 제5조, 제7조)

○ 이용료, 이용료의 반환(안 제8조, 제9조)

○ 시설의 위탁(안 제11조)

○ 자원봉사자 배치(안 제13조)

## Ⅲ 조례안

○ 진도군 국민해양안전관 운영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 : 붙임

## Ⅳ 향후 일정

○ 조례 제정안 입법 예고 : 2022. 7. ~ 2022. 8.

○ 조례·규칙 심의회 의결 : 2022. 8.

○ 군의회 안건 상정 및 의결 : 2022. 8. ~ 9.

○ 조례 공포 및 시행 : 2022. 10.

# 이태원 사고 사망자 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동의안

| 의 안 번 호 | 2023-24 |
|---|---|

제출연월일 : 2023년 3월 일
제 출 자 : 진도군수

이태원 사고 사망자 가족에 대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4항에 따라 진도군 지방세를 감면하도록 다음과 같이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

## 1. 감면대상자

이태원 사고로 인한 사망자의 부모, 배우자 및 자녀
(다만, 사망자의 부모, 배우자 및 자녀가 없는 경우에는 사실상의 보호자로 함)

## 2. 세목별 감면사항

**가. 주민세**

- 상기 감면대상자에게 부과되는 2023년 주민세(개인분, 사업소분 「지방세법」 제81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라 부과되는 세액으로 한정한다)를 면제한다.

**나.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

- 상기 감면대상자가 소유하고 있는 자동차에 부과되는 2022년 2기분 및 2023년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를 면제한다.

**다.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 이하 같다)

- 상기 감면대상자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에 부과되는 2023년 재산세를 면제한다.

## 3. 기타

가. 본 의결에 따른 감면은 직권 또는 신청에 따라 실시하되, 이미 납부한 지방세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환급한다.

나. 본 의결 후 추가로 확인된 사망자에 대해서도 의결된 안을 준용하여 감면한다.

다. 본 의결에 따른 면제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7조의2(지방세 감면 특례의 제한)의 적용을 배제한다.

## 4. 관계법령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제4항

> **제4조(조례에 따른 지방세 감면)** ④ 제1항과 제3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한 사유로 지방세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는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지방세 감면을 할 수 있다.

○ 「지방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조제5항

> **제2조(지방세 감면규모 등)** ⑤ 법 제4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한 사유"란 지진, 풍수해, 벼락, 화재, 전화(戰禍), 도괴(倒壞) 또는 이와 유사한 재해를 말한다.

## 5. 사전계획서 결재여부 : 여

## 6. 예산수반사항 : 해당 없음

## 7. 기타 참고사항 : 붙임

○ 「이태원 사고」 유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계획 1부.

군민이 주인! 살기좋은 진도

| 문서번호 | 세무회계과- |
|---|---|
| 보존기간 | 5년 |
| 공개여부 | 비공개 |
| 시행일자 | 2023. 3. |

| 담당자 | 세정팀장 | 세무회계과장 | 부군수 | 군 수 | 결재 |
|---|---|---|---|---|---|
| 김은주 | 정상한 | 박계철 | 이종성 | | |
| 협조 | | | | | |

# 이태원 사고 유가족 관련 지방세 감면 계획

진 도 군
[세무회계과]

# 이태원 사고 유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계획

이태원 사고로 인한 사망자의 유가족에 대해 지방세 감면 추진을 위한 필요절차로서 군의회에 「지방세 감면 동의안」을 제출하고자 함

## Ⅰ 추진 배경

### □ 필 요 성

○ 정부는 사회재난에 해당하는 「이태원 참사」 발생으로, 해당 지역인 서울시 용산구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 '22.10.30.)

○ 해당 사고로 고통받는 유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등 실질적 지원 필요.

○ 행안부에서는 全 지방자치단체 감면 동의안에 대한 지방의회 의결 추진

- 재난재해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에 대해 지방의회 의결을 통하여 지방세 감면 可(지방세특례제한법 §4④)

### □ 관련근거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 **천재지변**이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한 사유**로 지방세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 시, **지방의회 의결을 얻어 지방세 감면** 가능

○ 「지방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조 제5항

- 특수한 사유란 지진, 풍수해, 벼락, 전화 또는 이와 유사한 재해를 말함

## Ⅱ 감 면 개 요

### □ 감면대상

○ 이태원 참사로 인한 사망자의 부모, 배우자 및 자녀

- 사망자의 부모, 배우자 및 자녀가 없는 경우 사실상의 보호자

□ **감면내용** : '22.12. 자동차세 ~ '23년 지방세 부과세목 등에 대해 면제

| 세 목 | 부과대상 | 납기 | 비고 |
|---|---|---|---|
| 주 민 세<br>개 인 분* | - 사망자의 가족(개인, 개인사업자)<br>*지방세법 제81조 제1항 제1호 가목의 사업소분 포함 | 8월 | 군세 |
| 자동차세<br>소 유 분 | - 사망자 가족 소유 자동차 | 6월, 12월 | |
| 재 산 세 | - 사망자 가족 소유 토지·주택 등 | 7월, 9월 | |
| 지역자원<br>시 설 세 | - 사망자 가족 소유 건축물·주택 소방분 | | 도세 |
| 취 득 세 | - 사망자의 부동산 등을 그 가족이<br>상속으로 취득하는 경우 | 사망일부터<br>6개월 內 | |

⇒ 상기 도세에 해당하는 세목은 전라남도의회에서 "지방세 감면동의안" 의결

□ **감면방법** : 군의회 의결을 통한 지방세 감면

- 감면시행 방법 : 직권 감면을 원칙으로 하되, 누락자가 있을 경우에 대비하여 신청을 통한 감면 병행 추진
- 진도군 현재 확인된 감면대상자 : 0명*

  * 정기분 부과 세목 납기별 행정안전부 통보로 변동 가능

## Ⅲ 앞으로 추진계획

○ 지방세 감면동의안 군의회 제출 : 2023년 3월

**붙임1** 관련공문

인쇄 : 김은주 / 세무회계과 (2023-03-07 09:03:05)

세계로 뻗비하는 대도약! 전남행복시대

# 전 라 남 도

블루 이코노미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이태원 사고 관련 지방세 감면지원 기준 알림

1. 행정안전부 지방세특례제도과-2488(2022. 11 .2.)와 관련됩니다.

2. 행정안전부에서 이태원 사고 사망자 명단이 확보되는 대로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서 사망자의 가족관계를 전산 연계하여 각 시군에 유가족(사망자의 부모, 배우자 및 자녀, 사실상의 보호자)의 명단이 통보될 예정입니다.

3. 각 시군에서는 이태원 사고로 인한 유가족의 2022년 2기분 자동차세부터 지방세가 면제 지원될 수 있도록 붙임 감면지원 기준을 참고하여 2022년 11월 중 지방세 감면 동의안 의회 의결을 완료하여 주시고, 범정부 차원의 지방세 지원이 일관되게 시행될 수 있도록 신속히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 의결이 늦어지는 경우 2022년 2기분 자동차세 고지유예 실시

5. 아울러, 각 시군에 유가족 명단이 통보되는 대로 11월 중 감면 동의안 의회 의결 여부와 함께 아래 서식에 따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시 군 명 | 유가족 인원(명) | 2022년 11월 중 감면 동의안 의회 의결 여부 | 비 고 |
|---|---|---|---|
| | | *예) 11월 중 의결 완료, 진행중, 2023년 예정 등* | |

붙임 이태원 사고 관련 유가족 지방세 감면지원 기준 1부. 끝.

## 붙임2 근거법령

###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조례에 따른 지방세 감면)**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한 사유로 지방세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는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지방세 감면**을 할 수 있다.

**지방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조(지방세감면규모 등)**

⑤ 법 제4조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한 사유"란 지진, 풍수해, 벼락, 화재, 전화, 도괴 또는 이와 **유사한 재해**를 말한다.

# 202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 의 안 번 호 | 2023-25 |
|---|---|

제출연월일 : 2023년 3월 일
제 출 자 : 진 도 군 수

## 1. 제안이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2023년도에 매입 및 취득할 공유재산의 관리계획에 대하여 진도군 의회 의결을 얻고자 함

## 2. 주요내용

○ 청솔타운 조성에 따른 (구)칠전초등학교 매입
○ 블루버드 아일랜드 커뮤니센터 조성에 따른 (구)동거차분교 매입
○ 진도 그라운드 골프장 조성에 따른 부지 매입
○ 산림사업 편입토지 매입
○ 사유재산(농지) 기부채납 토지 취득

## 3. 세부 내역 : 첨 부

## 4. 관련법령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공유재산 관리계획)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공유재산 관리계획)
○ 『진도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2조(공유재산 관리계획)

## 5. 공유재산관리계획서 : 첨 부

# 2023년도 관리계획총괄표

회계명 : 일반회계 (단위 : ㎡, 동, 천원)

| 구분 | | | 상반기 | | | 하반기 | | | 합계 | | | 비고 |
|---|---|---|---|---|---|---|---|---|---|---|---|---|
| | | | 건수 | 수량 | 금액 | 건수 | 수량 | 금액 | 건수 | 수량 | 금액 | |
| 취득 | 계 | 토지<br>건물<br>기타 | 4<br>2<br>1 | 63<br>19<br>2 | 1,001,344<br>620,000<br>27,118 | | | | 4<br>2<br>1 | 63<br>19<br>2 | 1,001,344<br>620,000<br>27,118 | |
| | 1. 매입 | 토지<br>건물<br>기타 | 4<br>2<br>1 | 63<br>19<br>2 | 1,001,344<br>620,000<br>27,118 | | | | 4<br>2<br>1 | 63<br>19<br>2 | 1,001,344<br>620,000<br>27,118 | |
| | 2. 교환으로 취득 | 토지<br>건물<br>기타 | | | | | | | | | | |
| | 3. 기타취득 | 토지<br>건물<br>기타 | | | | | | | | | | |
| 처분 | 계 | 토지<br>건물<br>기타 | | | | | | | | | | |
| | 4. 매각 | 토지<br>건물<br>기타 | | | | | | | | | | |
| | 5. 양여 | 토지<br>건물<br>기타 | | | | | | | | | | |
| | 6. 교환으로 처분 | 토지<br>건물<br>기타 | | | | | | | | | | |
| 사용 및 대부허가 | | 계<br>토지<br>건물<br>기타 | | | | | | | | | | |

# 2023년도 취득대상재산목록

회계명 : 일반회계 (단위 : ㎡, 천원)

| 일련번호 | 재산표시 | | | 추정가액 | 취득시기 | 취득사유 | 비고 |
|---|---|---|---|---|---|---|---|
| | 지목 | 소재지 | 수량 | | | | |
| 1 | 학교용지 | 의신면 칠진리 744 | 12,243 | 50,000 | 2023.4. | 청솔타운 조성 | 토지 |
| | | 의신면 칠전리 744 | 1,268(12동) | 150,000 | | | 건물 |
| 2 | 학교용지 | 조도면 동거차도리 30-6 | 3,333 | 7,000 | 2023.4. | 블루버드아일랜드 커뮤니센터 조성 | 토지 |
| | | 조도면 동거차도리 62-8 | 783 | 3,000 | | | 토지 |
| | | 조도면 동거차도리 30-6 | 576.24(7동) | 170,000 | | | 건물 |
| 3 | 답 | 임회면 석교리 254 | 2,380 | 22,420 | 2023.7. | 진도 그라운드 골프장 조성 | 토지 |
| | 잔 | 임회면 석교리 268 | 1,769 | 6,581 | | | |
| | 전 | 임회면 석교리 268-1 | 337 | 1,197 | | | |
| | 임야 | 임회면 석교리 산 86-1 | 555 | 386 | | | |
| | 전 | 임회면 용호리 439-1 | 704 | 2,725 | | | |
| | 전 | 임회면 용호리 440-1 | 473 | 2,477 | | | |
| 4 | 임야 | 의신면 침계리 산 27 | 20,912 | 28,231 | 2023.12. | 산림복지단지 및 생태탐방로 조성 | 임야 |
| | | 의신면 침계리 산 28 | 29,287 | 39,537 | | | |
| | | 의신면 침계리 산 29 | 3,372 | 4,552 | | | |
| | | 의신면 침계리 산 30 | 7,825 | 10,563 | | | |
| | | 의신면 침계리 산 31 | 617 | 925, | | | |
| | | 의신면 침계리 산 32 | 1,831 | 2,471 | | | |
| | | 의신면 침계리 산 33-1 | 2,281 | 3,079 | | | |
| | | 의신면 침계리 산 33-2 | 8,754 | 11,817 | | | |
| | | 의신면 침계리 산 35 | 19,826 | 26,765 | | | |
| | | 의신면 침계리 산 35-6 | 30,625 | 41,343 | | | |

| | | | | | | | |
|---|---|---|---|---|---|---|---|
| | 임야 | 의신면 침계리 산 50 | 899 | 22,475 | | | |
| | 전 | 의신면 침계리 808 | 797 | 1,075 | | | |
| | 답 | 의신면 침계리 821 | 112 | 1,140 | | | |
| | 답 | 의신면 침계리 823 | 456 | 4,530 | | | |
| | 답 | 의신면 침계리 824 | 1,423 | 25,614 | | | |
| | 답 | 의신면 침계리 824-1 | 1,628 | 29,304 | | | |
| | 답 | 의신면 침계리 825 | 565 | 10,170 | | | |
| | 답 | 의신면 침계리 827 | 3,051 | 54,918 | | | |
| | 전 | 의신면 침계리 827-1 | 1,063 | 19,134 | | | |
| | 전 | 의신면 침계리 827-2 | 170 | 3,060 | | | |
| 4 | 임야 | 의신면 사천리 산74 | 17,554 | 26,331 | 2023.12. | 산림복지단지 및 생태탐방로 조성 | 토지 및 임야 |
| | | 의신면 사천리 산83 | 14,777 | 19,948 | | | |
| | | 의신면 사천리 산106-1 | 7,309 | 9,867 | | | |
| | | 의신면 사천리 산108 | 17,851 | 24,098 | | | |
| | | 의신면 사천리 산109 | 793 | 1,070 | | | |
| | | 의신면 사천리 산110 | 15,644 | 23,466 | | | |
| | | 의신면 사천리 산110-1 | 3,306 | 4,463 | | | |
| | | 의신면 사천리 산110-2 | 5,843 | 7,888 | | | |
| | | 의신면 사천리 산111 | 10,175 | 15,262 | | | |
| | | 의신면 사천리 산112 | 17,752 | 23,965 | | | |
| | | 의신면 사천리 산113 | 595 | 803 | | | |
| | | 의신면 사천리 산114-1 | 17,851 | 24,098 | | | |

| | | | | | | | |
|---|---|---|---|---|---|---|---|
| 4 | 임야 | 의신면 사천리 산114-2 | 496 | 669 | 2023.12. | 산림복지단지 및 생태탐방로 조성 | 보지 및 임야 |
| | 임야 | 의신면 사천리 산114-3 | 12,729 | 19,093 | | | |
| | 임야 | 의신면 사천리 산115 | 21,403 | 28,894 | | | |
| | 답 | 의신면 사천리 565 | 2,175 | 47,850 | | | |
| | 답 | 의신면 사천리 566 | 2,364 | 47,280 | | | |
| | 전 | 의신면 사천리 567 | 1,455 | 2,910 | | | |
| | 답 | 의신면 사천리 569 | 2,896 | 46,336 | | | |
| | 답 | 의신면 사천리 569-1 | 526 | 9,468 | | | |
| | 답 | 의신면 사천리 570 | 704 | 12,672 | | | |
| | 임야 | 의신면 사천리 570-1 | 198 | 3,168 | | | |
| | 답 | 의신면 사천리 571 | 377 | 6,032 | | | |
| | 임야 | 의신면 사천리 571-1 | 436 | 7,848 | | | |
| | 답 | 의신면 사천리 572 | 1,580 | 25,280 | | | |
| | 임 | 의신면 사천리 572-1 | 179 | 3,580 | | | |
| | 임 | 의신면 사천리 572-2 | 456 | 9,120 | | | |
| | 답 | 의신면 사천리 573 | 255 | 4,080 | | | |
| | 전 | 의신면 사천리 846 | 2,536 | 45,648 | | | |
| | 전 | 의신면 사천리 847 | 397 | 7,146 | | | |
| | 답 | 군내면 둔전리 24 | 2,215 | 39,870 | | | |
| | 답 | 군내면 둔전리 24-1 | 13 | 234 | | | |
| | 답 | 군내면 둔전리 25 | 251 | 4,518 | | | |
| | 임 | 군내면 둔전리 산45-1 | 4,760 | 11,900 | | | |
| 5 | 전 | 임회면 삼막리 753-4 | 5,491 | 26,522 | 2023.4. | 청년농업인 경영실습 임대농장 및 실증 시험포 구축 | 도지 |
| | 도로 | 임회면 삼막리 753-13 | 377 | 596 | | | |

# 공유재산 관리계획 대상 재산 목록

| 연번 | 제 목 | 내 용 | 제안부서 |
|---|---|---|---|
| 1 | 청년거점시설 및 주거공간 조성<br>(구)칠전초등학교 매입 | - 위 치 : 의신면 칠전리 744<br>- 면 적 : 토지 12,243㎡<br>건물 1,268㎡(12동)<br>- 대장가액(감정) : 500,000천원<br>토지 50,000천원<br>건물 450,000천원<br>- 소 유 자 : 전라남도(전라남도교육감)<br>- 목 적 : 청년인구 유입 및<br>거점시설 조성 목적으로 매입 | 인구정책실<br>(고향사랑팀) |
| 2 | 섬 관광인구 유입 기반시설 조성<br>(구)동거차분교 매입 | - 위 치 : 조도면 동거차도리 30-6 외 1필지<br>- 면 적 : 토지 4,116㎡<br>건물 576㎡(7동)<br>- 대장가액(감정) : 180,000천원<br>토지 10,000천원<br>건물 170,000천원<br>- 소 유 자 : 전라남도(전라남도교육감)<br>- 목 적 : 섬 인구 유입 및 관광인구<br>확대를 위한 시설 조성<br>목적으로 매입 | 인구정책실<br>(고향사랑팀) |
| 3 | 진도 그라운드 골프장<br>조성에 따른 부지매입 | - 위 치 : 임회면 석교리 254 외 5필지<br>- 면 적 : 토지 6,218㎡<br>- 대장가액 : 35,786천원<br>- 소 유 자 : 개인<br>- 목 적 : 진도 그라운드 골프장 조성 | 문화예술체육과<br>(체육지원팀) |

| 연번 | 제 목 | 내 용 | 제안부서 |
|---|---|---|---|
| 4 | 산림사업 편입토지 매입 | - 위 치 : 의신면 침계리 산27 외 53필지<br>- 면 적 : 토지 323,344㎡<br>- 대장가액 : 905,558천원<br>- 소 유 자 : 개인<br>- 목 적 : 산림복지단지 및 생태탐방로 조성 등 경관개선 | 산림휴양과<br>(산림치유팀) |
| 5 | 기부채납에 따른 토지취득 | - 위 치 : 입회면 심막리 753-4 외 1필지<br>- 면 적 : 토지 5,868㎡<br>- 대장가액 : 27,118천원<br>- 소 유 자 : 개인<br>- 목 적 : 청년농업인 경영실습 임대농장 활용<br>※ 기부채납자 :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동 김석열 외 1인 | 농업기술센터<br>(지도기획팀) |

# 1. 청솔타운 조성
## (구)칠전초등학교 매입

### 1. 제안이유

○ 지방소멸 및 지역 인구감소 대응의 일환으로 지방소멸 대응 기금을 활용하여 (구)칠전초등학교를 매입 후 청년인구 유입 및 거점 시설을 조성하고자 해당 자산을 매입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공유재산 매입에 관한 사항

| 연번 | 구분 | 위치 | 지목 | 면 적(㎡) | 재산가액(천원) | 비 고 |
|---|---|---|---|---|---|---|
| 계 | | | | 13,511 | 500,000 | |
| 1 | 건물 | 의신면 칠전리 744 | 건물<br>(12동) | 1,268<br>(383.44평) | 450,000 | |
| 2 | 토지 | 의신면 칠전리 744 | 학교<br>용지 | 12,243<br>(3,702.28평) | 50,000 | |

### 3. 주관과 의견

○ 지방소멸 및 인구감소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지역의 유휴자원을 활용하여 청년 거점 시설 및 주거 공간을 조성하여 청년인구 유입으로 지역 인구 활력을 제고하고자 함

## Ⅰ 위 치 도(위성사진)

## Ⅱ 현장사진

# 2. 블루버드 아일랜드 커뮤니센터 조성
## (구)동거차분교 매입

### 1. 제안이유

○ 지방소멸 및 지역 인구감소 대응의 일환으로 지방소멸 대응 기금을 활용하여 (구)동거차분교를 매입 후 섬 인구 유입 및 관광인구 확대 기반 시설을 조성하고자 해당 자산을 매입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공유재산 매입에 관한 사항

| 연번 | 구분 | 위치 | 지목 | 면 적(㎡) | 재산가액(천원) | 비 고 |
|---|---|---|---|---|---|---|
| 계 | | | | 4,692.24 | 180,000 | |
| 1 | 건물 | 조도면 동거차도리 30-6 | 건물 (7동) | 576.24 (174.25평) | 170,000 | |
| 2 | 토지 | 조도면 동거차도리 30-6 | 학교 용지 | 3,333 (1,007.90평) | 7,000 | |
| 3 | 토지 | 조도면 동거차도리 62-8 | 학교 용지 | 783 (236.78평) | 3,000 | |

### 3. 주관과 의견

○ 지방소멸 및 인구감소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지역의 유휴자원을 활용하여 섬 인구 유입 및 관광인구 확대 기반 시설을 조성하여 섬지역 인구 유입으로 지역 인구 활력을 제고하고자 함

## Ⅰ 위 치 도[위성사진]

## Ⅱ 현장사진

# 3. 진도 그라운드 골프장 조성

## 1. 제안이유

○ 임회면 용호리 439-1번지(외 4필지) 일원에 그라운드 골프장 조성을 계획하였으나 동호인 수 증가로 접근성이 용이한 임회면 석교리 254번지(외 3필지)에 골프장을 조성하고자 함

○ 당초 관리계획 필지 중 용호리 439-1, 440-1번지에서 지속적인 체육활동이 가능하도록 추가부지를 매입하여 안정적인 체육환경 조성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공유재산 매입에 관한 사항

| 연번 | 구분 | 토지소재지 | 지목 | 면 적(㎡) | 재산가액(천원) | 비 고 |
|---|---|---|---|---|---|---|
| 계 | | 6필지 | | 6,218 | 35,786 | |
| 1 | 토지 | 임회면 석교리 254 | 답 | 2,380 | 22,420 | |
| 2 | | 임회면 석교리 268 | 전 | 1,769 | 6,581 | |
| 3 | | 임회면 석교리 268-1 | 전 | 337 | 1,197 | |
| 4 | | 임회면 석교리 산 86-1 | 임야 | 555 | 386 | |
| 5 | | 임회면 용호리 439-1 | 전 | 704 | 2,725 | |
| 6 | | 임회면 용호리 440-1 | 전 | 473 | 2,477 | |

## 3. 주관과 의견

○ 진도군 그라운드 골프장 조성을 위해 석교리 일원의 부지를 신규 취득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 기존 동호인이 이용중인 부지 일부를 매입하여 골프장 조성시까지 안정적인 체육활동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됨

# Ⅰ 위 치 도(위성사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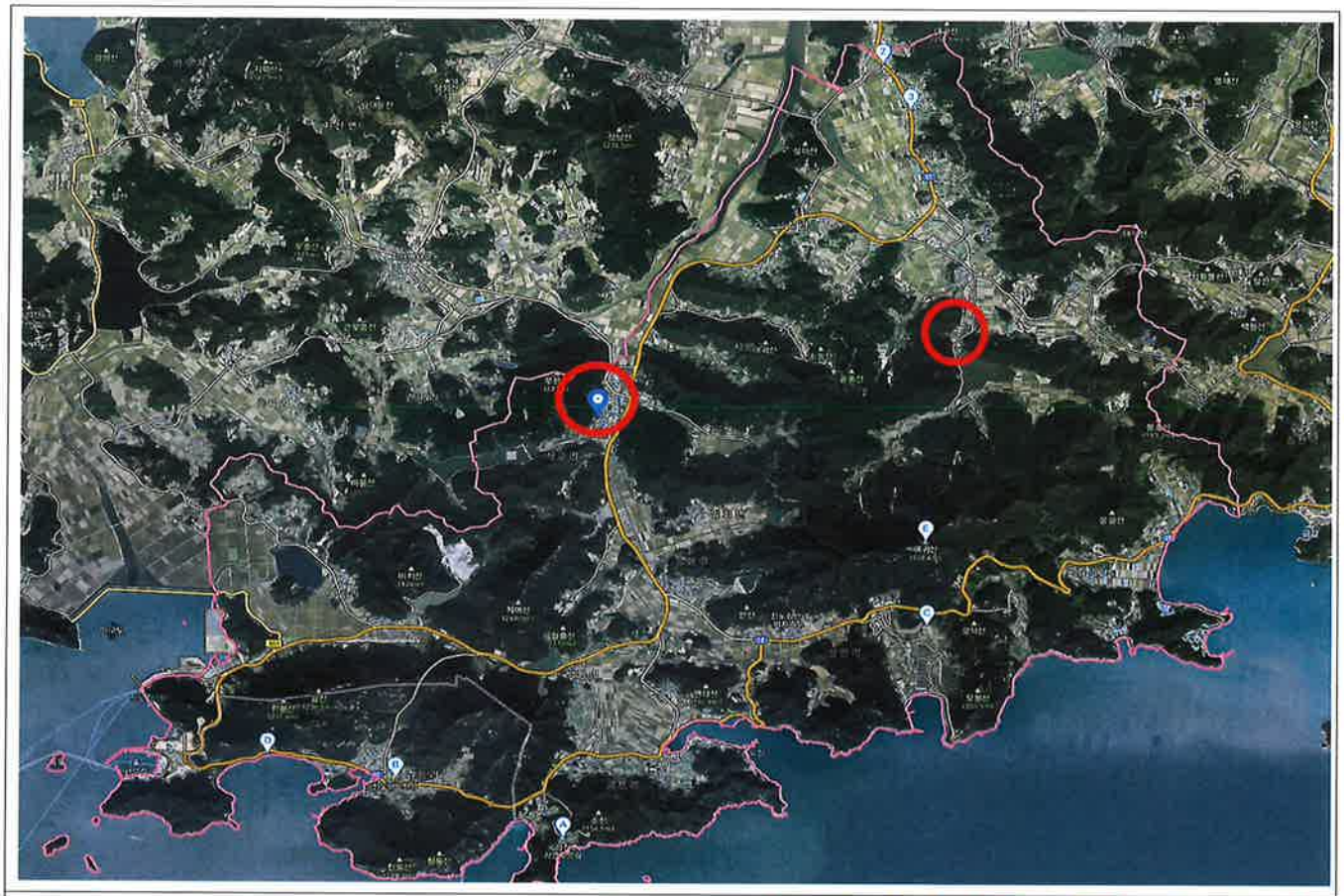

임회면 석교리 254 외 3필지

임회면 용호리 439-1 외 1필지

## II 현장사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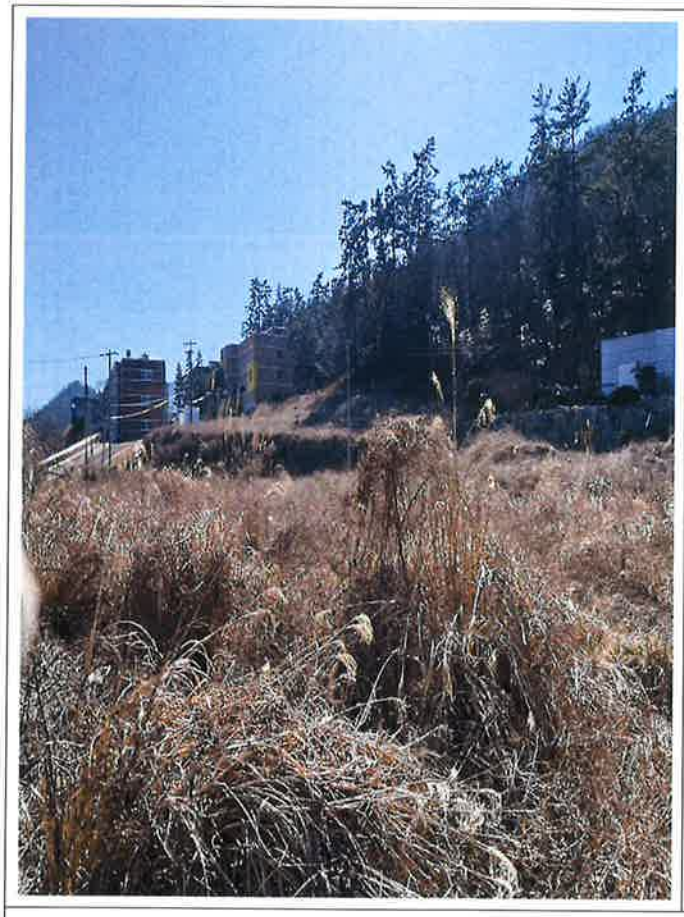

임회면 석교리 254 외 3필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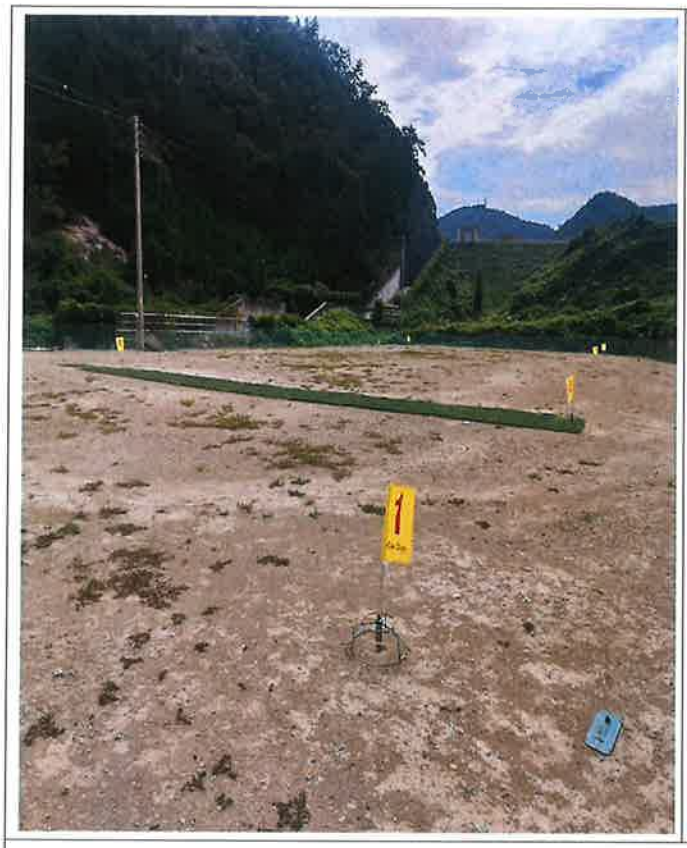

임회면 용호리 439-1 외 1필지

# 4. 산림복지단지 및 생태탐방로 조성

## 1. 제안이유

○ 2023년도 산림복지단지 및 생태탐방로 조성 등 경관개선을 위하여 인근 편입토지를 매입코자, 공유재산 관리계획 심의를 건의함

## 2. 주요내용

○ 공유재산 매입에 관한 사항

| 연번 | 구분 | 토지소재지 | | 지목 | 면 적(㎡) | 재산가액(천원) | 비 고 |
|---|---|---|---|---|---|---|---|
| 총계 | | 54필지 | | | 323,344 | 905,558 | |
| 계 | | 20필지 | | | 135,494 | 340,703 | |
| 1 | 매입 | 의신친계 | 산27 | 임 | 20,912 | 28,231 | |
| 2 | 〃 | 〃 | 산28 | 임 | 29,287 | 39,537 | |
| 3 | 〃 | 〃 | 산29 | 임 | 3,372 | 4,552 | |
| 4 | 〃 | 〃 | 산30 | 임 | 7,825 | 10,563 | |
| 5 | 〃 | 〃 | 산31 | 임 | 617 | 925, | |
| 6 | 〃 | 〃 | 산32 | 임 | 1,831 | 2,471 | |
| 7 | 〃 | 〃 | 산33-1 | 임 | 2,281 | 3,079 | |
| 8 | 〃 | 〃 | 산33-2 | 임 | 8,754 | 11,817 | |
| 9 | 〃 | 〃 | 산35 | 임 | 19,826 | 26,765 | |
| 10 | 〃 | 〃 | 산35-6 | 임 | 30,625 | 41,343 | |
| 11 | 〃 | 〃 | 산50 | 임 | 899 | 22,475 | |
| 12 | 〃 | 〃 | 808 | 전 | 797 | 1,075 | |

| | | | | | | | |
|---|---|---|---|---|---|---|---|
| 13 | 〃 | 〃 | 821 | 답 | 112 | 1,140 | |
| 14 | 〃 | 〃 | 823 | 답 | 456 | 4,530 | |
| 15 | 〃 | 〃 | 824 | 답 | 1,423 | 25,614 | |
| 16 | 〃 | 〃 | 824-1 | 답 | 1,628 | 29,304 | |
| 17 | 〃 | 〃 | 825 | 답 | 565 | 10,170 | |
| 18 | 〃 | 〃 | 827 | 답 | 3,051 | 54,918 | |
| 19 | 〃 | 〃 | 827-1 | 전 | 1,063 | 19,134 | |
| 20 | 〃 | 〃 | 827-2 | 전 | 170 | 3,060 | |
| **계** | | **30필지** | | | **180,612** | **508,333** | |
| 1 | 〃 | 의신 사천 | 산74 | 임 | 17,554 | 26,331 | |
| 2 | 〃 | 〃 | 산83 | 임 | 14,777 | 19,948 | |
| 3 | 〃 | 〃 | 산106-1 | 임 | 7,309 | 9,867 | |
| 4 | 〃 | 〃 | 산108 | 임 | 17,851 | 24,098 | |
| 5 | 〃 | 〃 | 산109 | 임 | 793 | 1,070 | |
| 6 | 〃 | 〃 | 산110 | 임 | 15,644 | 23,466 | |
| 7 | 〃 | 〃 | 산110-1 | 임 | 3,306 | 4,463 | |
| 8 | 〃 | 〃 | 산110-2 | 임 | 5,843 | 7,888 | |
| 9 | 〃 | 〃 | 산111 | 임 | 10,175 | 15,262 | |
| 10 | 〃 | 〃 | 산112 | 임 | 17,752 | 23,965 | |
| 11 | 〃 | 〃 | 산113 | 임 | 595 | 803 | |
| 12 | 〃 | 〃 | 산114-1 | 임 | 17,851 | 24,098 | |
| 13 | 〃 | 〃 | 산114-2 | 임 | 496 | 669 | |
| 14 | 〃 | 〃 | 산114-3 | 임 | 12,729 | 19,093 | |
| 15 | 〃 | 〃 | 산115 | 임 | 21,403 | 28,894 | |

| | | | | | | | |
|---|---|---|---|---|---|---|---|
| 16 | 〃 | 〃 | 565 | 답 | 2,175 | 47,850 | |
| 17 | 〃 | 〃 | 566 | 답 | 2,364 | 47,280 | |
| 18 | 〃 | 〃 | 567 | 전 | 1,455 | 2,910 | |
| 19 | 〃 | 〃 | 569 | 답 | 2,896 | 46,336 | |
| 20 | 〃 | 〃 | 569-1 | 답 | 526 | 9,468 | |
| 21 | 〃 | 〃 | 570 | 답 | 704 | 12,672 | |
| 22 | 〃 | 〃 | 570-1 | 임 | 198 | 3,168 | |
| 23 | 〃 | 〃 | 571 | 답 | 377 | 6,032 | |
| 24 | 〃 | 〃 | 571-1 | 임 | 436 | 7,848 | |
| 25 | 〃 | 〃 | 572 | 답 | 1,580 | 25,280 | |
| 26 | 〃 | 〃 | 572-1 | 임 | 179 | 3,580 | |
| 27 | 〃 | 〃 | 572-2 | 임 | 456 | 9,120 | |
| 28 | 〃 | 〃 | 573 | 답 | 255 | 4,080 | |
| 29 | 〃 | 〃 | 846 | 전 | 2,536 | 45,648 | |
| 30 | 〃 | 〃 | 847 | 전 | 397 | 7,146 | |
| **계** | | **4필지** | | | **7,239** | **56,522** | |
| 1 | 〃 | 군내 둔전 | 24 | 답 | 2,215 | 39,870 | |
| 2 | 〃 | 〃 | 24-1 | 답 | 13 | 234 | |
| 3 | 〃 | 〃 | 25 | 답 | 251 | 4,518 | |
| 4 | 〃 | 〃 | 산45-1 | 임 | 4,760 | 11,900 | |

## 3. 주관과 의견

○ 의신면 사천권 및 군내면 둔전리 일원 산림사업을 시행하고자 편입도지를 매입하여 산림복지단지조성 및 생태탐방로 조성 등을 통하여 쾌적하고 아름다운 산림환경 조성은 물론 주기적인 시설물 유지관리로 이용객들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함

# Ⅰ 위 치 도(위성사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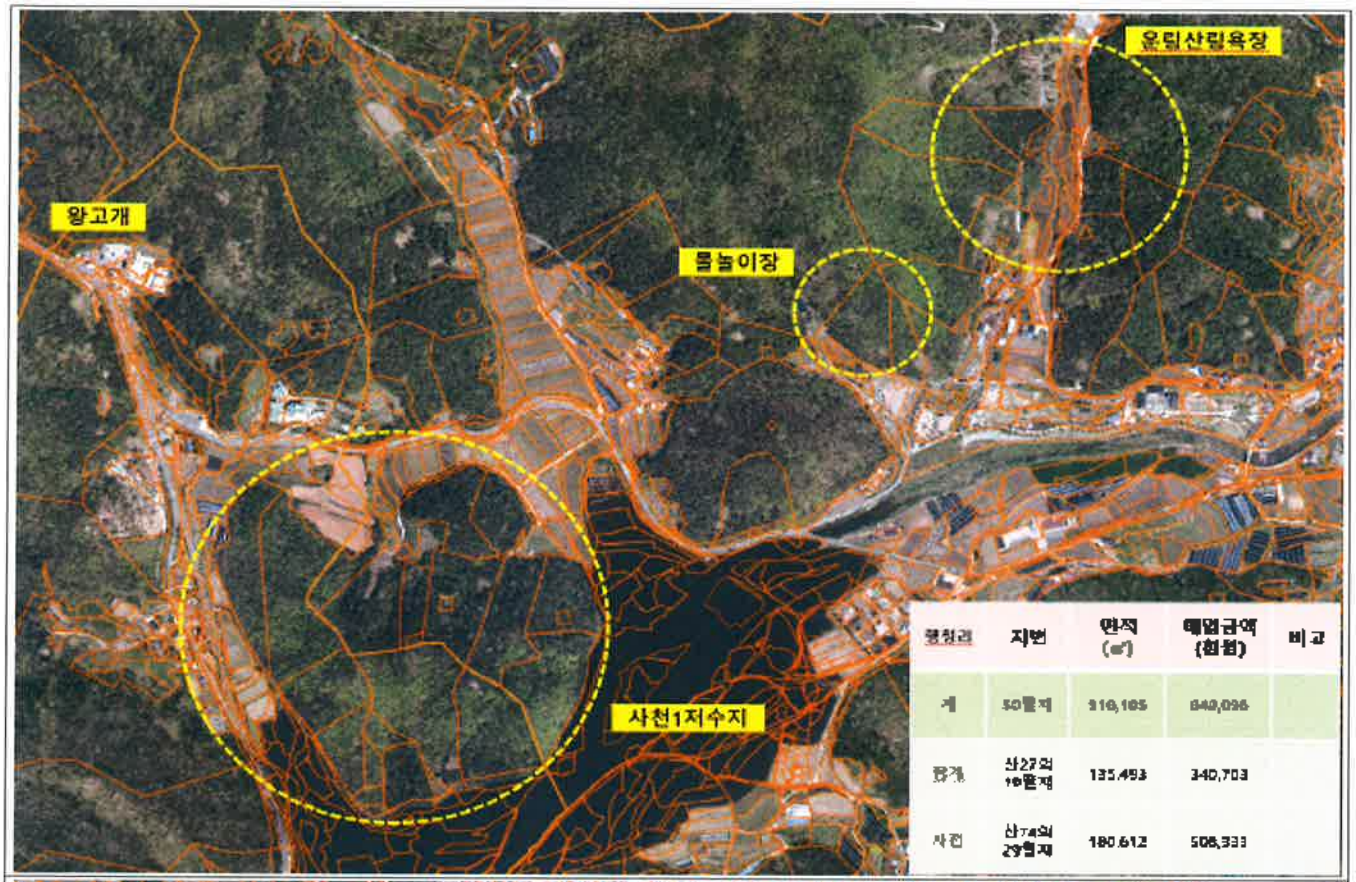


| 행정리 | 지번 | 면적(㎡) | 매입금액(천원) | 비고 |
|---|---|---|---|---|
| 계 | 50필지 | 316,185 | 849,036 | |
| 왕계 | 산27외 19필지 | 135,493 | 340,703 | |
| 사천 | 산74외 29필지 | 180,612 | 508,333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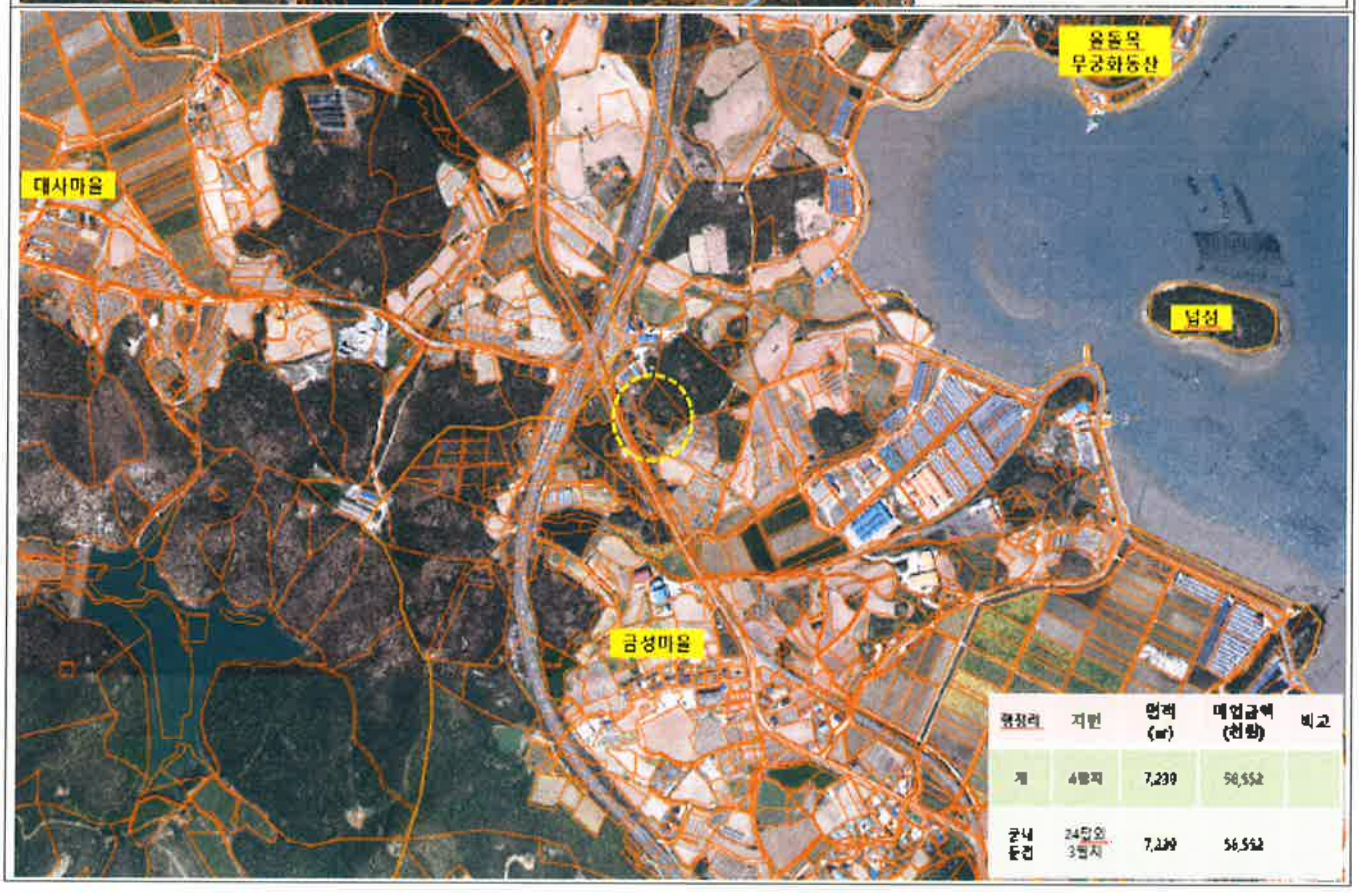


| 행정리 | 지번 | 면적(㎡) | 매입금액(천원) | 비고 |
|---|---|---|---|---|
| 계 | 4필지 | 7,239 | 56,552 | |
| 군내 동리 | 24임외 3필지 | 7,239 | 56,552 | |

## II 현장사진-1

## II 현장사진-2

# 5. 사유재산 기부채납에 따른 토지 취득

## 1. 제안이유

○ 토지 소유주가 농업기술센터 시설 및 실증 포장으로 활용하기를 원하여 기부채납에 동의하였기에 공유재산 관리계획 심의를 건의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공유재산 취득에 관한 사항

| 연번 | 구분 | 토지소재지 | 지목 | 면적 (㎡) | 소유자 | 개별공시지가 (원/㎡) | 재산가액 (천원) |
|---|---|---|---|---|---|---|---|
| 합계 | | | | 5,868 | | | 27,118 |
| 1 | 토지 | 임회면 삼막리 753-4 | 전 | 5,491 | 김석열<br>김상열<br>(공동지분) | 4,830 | 26,522 |
| 2 | | 임회면 삼막리 753-13 | 도로 | 377 | 김석열 | 1,580 | 596 |

## 3. 주관과 의견

○ 토지를 기부채납 받아 농업기술센터 청년농업인 경영실습 임대농장 및 실증 시험포 구축하여 활용하고자 함

# Ⅰ 위 치 도(위성사진)

## II 현장사진

# 진도군 공유재산심의회 심의 의결서

## □ 심의결과

| 구분 | 제 목 | 신 청 자 | 심 의 요 지 | 심의결과 |
|---|---|---|---|---|
| 2023<br>-1호 | 청년 거점시설 및 주거공간 조성<br>(구)월전초등학교 매입 | 인구정책실장 | - 위 치 : 의신면 십전리 744<br>- 면 적 : 토지 12,243㎡<br>건물 1,268㎡(12동)<br>- 대장가액(감정) : 500,000천원<br>토지 50,000천원<br>건물 450,000천원<br>- 소 유 자 : 전라남도(전라남도교육감)<br>- 목 적 : 청년인구 유입 및<br>거점시설 조성 목적으로 매입 | 가 |

위와 같이 심의·의결함
2023. 3. 9.

| 구 분 | 직 위 | 성 명 | 서 명 | | 부(否)일 경우 사 유 |
|---|---|---|---|---|---|
| | | | 가(可) | 부(否) | |
| 1 | 위 원 장 | 우 흥 섭 | 우흥섭 | | |
| 2 | 부 위 원 장 | 박 계 천 | 박계천 | | |
| 3 | 위 원 | 허 수 철 | 허수철 | | |
| 4 | 위 원 | 이 미 예 | 이미예 | | |
| 5 | 위 원 | 정 동 조 | 정동조 | | |
| 6 | 위 원 | 이 재 식 | 이재식 | | |
| 7 | 위 원 | 이 애 순 | | | |
| 8 | 위 원 | 이 상 림 | 이상림 | | |

# 진도군 공유재산심의회 심의 의결서

## ❑ 심의결과

| 구분 | 제 목 | 신 청 자 | 심 의 요 지 | 심의결과 |
|---|---|---|---|---|
| 2023<br>-2호 | 섬 관광인구 유입 기반사설 조성<br>(구)동거차분교 매입 | 인구정책실장 | - 위 치 : 조도면 동거차도리 316 외 1필지<br>- 면 적 : 토지 4,116㎡<br>건물 576㎡(7동)<br>- 대장가액(감정) : 180,000천원<br>토지 10,000천원<br>건물 170,000천원<br>- 소 유 자 : 전라남도(전라남도교육감)<br>- 목 적 : 섬 인구 유입 및 관광인구 확대를 위한 시설 조성 목적으로 매입 | 가 |

위와 같이 심의-의결함
2023. 3. 9.

| 구 분 | 직 위 | 성 명 | 서 명 | | 부(否)일 경우 사 유 |
|---|---|---|---|---|---|
| | | | 가(可) | 부(否) | |
| 1 | 위 원 장 | 우 홍 섭 | 우홍섭 | | |
| 2 | 부 위 원 장 | 박 계 천 | 박계천 | | |
| 3 | 위 원 | 허 수 철 | 허수철 | | |
| 4 | 위 원 | 이 미 에 | 이미에 | | |
| 5 | 위 원 | 정 동 조 | 정동조 | | |
| 6 | 위 원 | 이 계 식 | 이계식 | | |
| 7 | 위 원 | 이 애 순 | | | |
| 8 | 위 원 | 이 상 림 | 이상림 | | |

# 진도군 공유재산심의회 심의 의결서

## ❑ 심의결과

| 구분 | 제 목 | 신 청 자 | 심 의 요 지 | 심의결과 |
|---|---|---|---|---|
| 2023<br>-3호 | 진도 그라운드 골프장<br>조성에 따른 부지매입 | 문화예술체육과장 | - 위 치 : 임회면 석교리 254 외 5필지<br>- 면 적 : 토지 6,218㎡<br>- 대장가액 : 35,786천원<br>- 소 유 자 : 개인<br>- 목 적 : 진도 그라운드 골프장 조성 | 가 |

위와 같이 심의·의결함
2023. 3. 9.

| 구 분 | 직 위 | 성 명 | 서 명 | | 부(否)일 경우 사 유 |
|---|---|---|---|---|---|
| | | | 가(可) | 부(否) | |
| 1 | 위 원 장 | 우 홍 섭 | 우홍섭 | | |
| 2 | 부 위 원 장 | 박 계 천 | 박계천 | | |
| 3 | 위 원 | 허 수 철 | 허수철 | | |
| 4 | 위 원 | 이 미 예 | 이미예 | | |
| 5 | 위 원 | 정 동 조 | 정동조 | | |
| 6 | 위 원 | 이 재 식 | 이재식 | | |
| 7 | 위 원 | 이 예 순 | | | |
| 8 | 위 원 | 이 상 림 | 이상림 | | |

# 진도군 공유재산심의회 심의 의결서

## □ 심의결과

| 구분 | 제 목 | 신 청 자 | 심 의 요 지 | 심의결과 |
|---|---|---|---|---|
| 2023<br>-4호 | 산림사업 편입토지 매입 | 산림휴양과장 | - 위 치 : 의신면 침계리 산27 외 5필지<br>- 면 적 : 보지 323.344㎡<br>- 대장가액 : 905,558천원<br>- 소 유 자 : 개인<br>- 목 적 : 산림복지단지 및 생태탐방로 조성 등 경관개선 | 가 |

위와 같이 심의·의결함
2023. 3. 9.

| 구 분 | 직 위 | 성 명 | 서 명 | | 부(否)일 경우 사 유 |
|---|---|---|---|---|---|
| | | | 가(可) | 부(否) | |
| 1 | 위 원 장 | 우 홍 섭 | 우홍섭 | | |
| 2 | 부 위 원 장 | 박 계 천 | 박계천 | | |
| 3 | 위 원 | 허 수 철 | 허수철 | | |
| 4 | 위 원 | 이 미 예 | 이미예 | | |
| 5 | 위 원 | 정 동 조 | 정동조 | | |
| 6 | 위 원 | 이 제 식 | 이재식 | | |
| 7 | 위 원 | 이 애 순 | | | |
| 8 | 위 원 | 이 상 림 | 이상림 | | |

# 진도군 공유재산심의회 심의 의결서

## □ 심의결과

| 구분 | 제 목 | 신 청 자 | 심 의 요 지 | 심의결과 |
|---|---|---|---|---|
| 2023<br>-5호 | 사유재산(농지) 기부채납<br>토지 취득 | 농업기술센터소장 | - 위 치 : 임회면 삼마리 753-4 외 1필지<br>- 면 적 : 토지 5,868㎡<br>- 대장가액 : 27,118천원<br>- 소 유 자 : 개인<br>- 목 적 : 청년농업인 경영실습 임대농장 활용<br>※ 기부채납자 :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동 김○철 외 1인 | 가 |

위와 같이 심의·의결함
2023. 3. 9.

| 구 분 | 직 위 | 성 명 | 서 명 | | 부(否)일 경우 사 유 |
|---|---|---|---|---|---|
| | | | 가(可) | 부(否) | |
| 1 | 위 원 장 | 우 흥 섭 | 우흥섭 | | |
| 2 | 부 위 원 장 | 박 계 천 | 박계천 | | |
| 3 | 위 원 | 허 수 철 | 허수철 | | |
| 4 | 위 원 | 이 미 예 | 이미예 | | |
| 5 | 위 원 | 정 동 조 | 정동조 | | |
| 6 | 위 원 | 이 재 식 | 이재식 | | |
| 7 | 위 원 | 이 애 순 | | | |
| 8 | 위 원 | 이 상 림 | 이상림 | | |